

입 소 이 용 안 내 서

푸른숲요양원

【인사말】

“푸른숲요양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푸른숲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원 소개

기 관 명	푸른숲요양원	설치일자	2012.05.02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46 명
대표자	정무균	협력의료	추병원
홈페이지	http://15779165.wazzang.com	전화번호	031)855-9165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25번길 133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2,700 원 (1식)	
	상급침실 비용	1인실 10,000원 ,2인실 7,000원 (1박 기준)	
시설규모	대지 849㎡, 건물면적 464.02㎡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사	간호실	물리 (작업)	프로 그램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시설	20	1	1	1	1	1	2	2	2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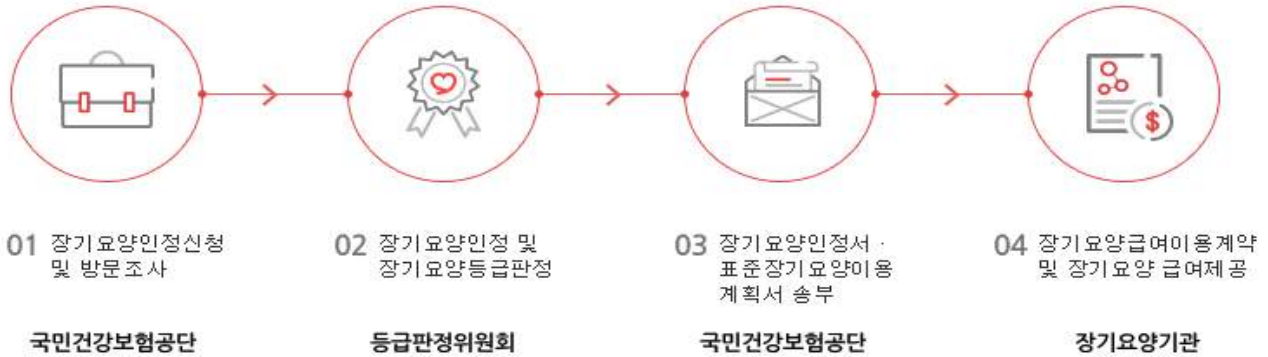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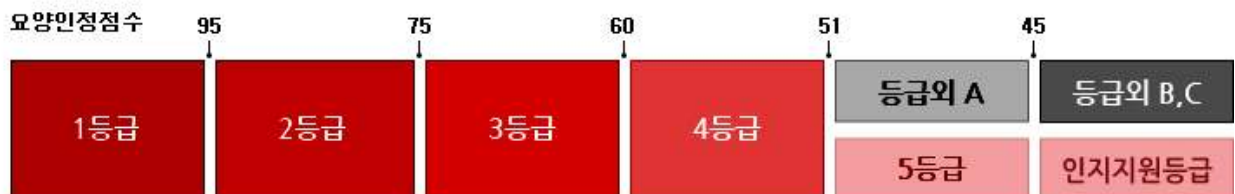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듐)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듐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슴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시 간	내 용
06:30 ~ 07:00	기상 및 위생관리, 아침 식사 준비
07:00 ~ 08:00	조 식(구강관리/식사보조/투약관리)
08:00 ~ 09:00	휴식 (TV시청 및 휴식)
09:00 ~ 10:30	기초 건강 체크(혈당, 혈압, 건강체크, 목욕서비스)
10:30 ~ 12:00	개별 프로그램(건강체조 및 작업치료 재활운동)
12:00 ~ 13:00	중 식(투약관리/ 식사보조/구강관리)
13:00 ~ 13:30	기능회복훈련
13:30 ~ 14:00	자유 활동
14:00 ~ 15:00	그룹 프로그램(재활치료/물리치료)
15:00 ~ 15:30	간 식(영양식/음료)
15:30 ~ 17:00	개별 프로그램(건강체조 및 작업치료 재활운동)
17:00 ~ 18:00	석 식(투약관리/ 식사보조/ 구강관리)
18:00 ~ 19:30	자유활동
19:30 ~ 21:00	위생시간(용변 및 위생관리 틀니관리)
21:00 ~ 21:30	투약관리
21:30 ~	취 침(2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환)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기능회복훈련 (45분)	기능회복훈련 (45분)	기능회복훈련 (45분)	기능회복훈련 (45분)	기능회복훈련 (45분)	기능회복훈련 (45분)
인지프로그램 (60분)	인지프로그램 (60분)님	여가활동 (60분)	인지프로그램 (60분)님	인지프로그램 (60분)	여가활동 (60분)
▶ 매월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2022.1월 기준 요양원 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1	2	3	1	18	1
야간근무 매일 22:00~06:00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30일기준) (단위 :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20%)
1	74,850	449,100
2	69,450	416,700
3,4,5	64,040	384,24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본인부담금 100분에 60/40)	감경 8%, 12%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대인 1인당 1억/ 사고당 5억 / 대물 사고당1천만	2022년 03월 25일 ~ 2023년 03월 25일

● 노인학대예방 정보.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코로나 방역 수칙 (2022년 06월 20일부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종사자 선제검사	주2회 PCR, 주2회 RAT(신속항원검사)	주 1회 PCR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2회 PCR, 4일 격리	입소시 1회,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	* 입소전 48시간 이내 PCR검사로 음성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접촉 면회	자격기준(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충족 시 허용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외부프로그 램	주 야간보호센터만 허용	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절차

대한민국 아들·딸의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돌보겠습니다.

01
신청

클릭

02
인정조사

클릭

03
등급판정

클릭

04
이용계획서

클릭

05
결과통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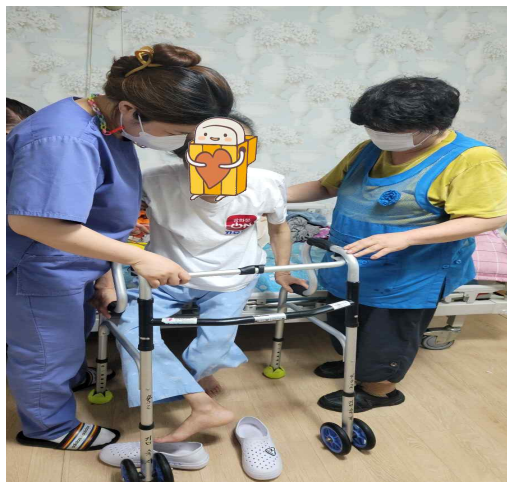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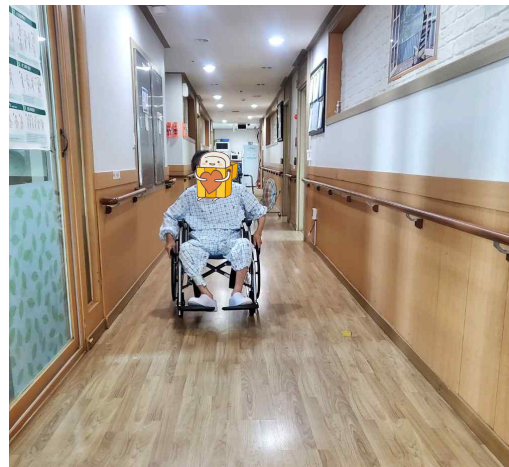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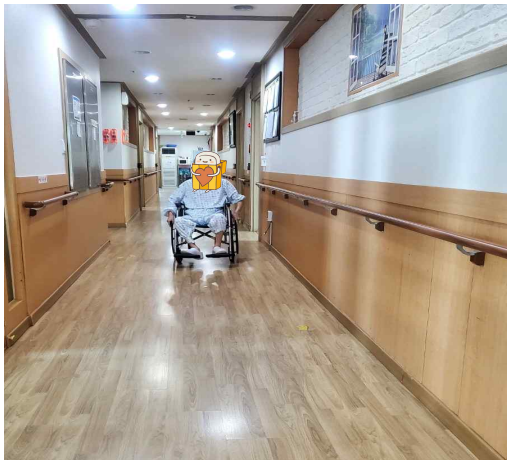
06
서비스이용

클릭

어르신케어 우수사례

- ◎ 성 명 : 김 ♡ 속
- ◎ 나이/성별 : 만64세 / 여
- ◎ 변화 내용 : 요양원에 처음 입소하실 때는 1등급 어르신으로 입소하여 전적 도움으로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인지프로그램, 기능회복훈련, 작업치료 등으로 인해 지금은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운전하며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커를 잡고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신체 및 인지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께서 꾸준한 급여제공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과 독립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활 동 사 진



푸른숲요양원

욕창 우수사례

- ◎ 성 명 : 전 ♡ 임
- ◎ 나이/성별 : 만86세 / 여
- ◎ 변화내용 : 요양원에서 와상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으로써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많으셔서 욕창이 생기셨으나 매일 욕창 치료를 하고 체위변경을 1시간에 한번씩 하며 욕창이 나아 가셨으며, 어르신께서 욕창이 생기셨을 때 얼굴화색이 안좋으시며 누워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욕창이 점점 나으시면서 얼굴 화색도 매우 좋아 지시며 얼굴도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더 아프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푸른숲요양원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숲요양원